

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
2022. 8. 26. (금) 11:10

# 검 토 보 고 서

1. [제87호]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2. [제88호]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
3. [제89호]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
4. [제90호]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5. [제91호]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

**의회운영위원회**

전문위원 김 영 중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		
의안번호	제87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8. 19.	회 부 일	2022. 8. 19.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시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대상(안 제2조)
- 다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시 여비 지급(안 제3조)

## 3. 검토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(2022.1.13.)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
- 다.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		
의안번호	제88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8. 19.	회 부 일	2022. 8. 19.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선발 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상여금 지급 및 중지 (안 제4조 ~ 안 제6조)

## 3. 검토의견

- 가. 본 규칙안은 「논산시의회포상규칙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(2022.1.13.)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
- 다. 지방자치법 제52조, 모범공무원 규정 제1조, 제8조의2, 논산시의회 포상 규칙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		
의안번호	제89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8. 19.	회 부 일	2022. 8. 19.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진행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외활동이 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적용대상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다.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(안 제5조 ~ 안 제8조)
- 라. 교육 및 사후관리 (안 제9조 ~ 안 제12조)

## 3. 검토의견

- 가. 본 규칙안은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(2022.1.13.)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써
- 다. 지방자치법 제5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90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8. 19.	회 부 일	2022. 8. 19.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9조)

## 3. 검토의견

- 가.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, 논산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중 11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
- 나.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		
의안번호	제91호	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 출 일	2022. 8. 19.	회 부 일	2022. 8. 19.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1조)

## 3. 검토의견

가.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규칙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, 논산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규칙중 4개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

나. 지방자치법 제5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